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장기요양 등급자가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에 의한다.

다. 이용계약 체결 전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한다.

다.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한다.

라.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비급여 항목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청구하도록 한다.

마. 제1항 이외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이 이를 전액 실비로 부담한다.

바. 월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자동이체(CMS)로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납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3)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
- 4)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권리

나. 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것으로써 병력, 생활력 등 제반의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2) 연락처가 변경될 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 3) 보호자가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알려주어야 한다.
- 4)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2)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3)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기관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통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기관은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